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운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13

발의연월일: 2021. 7. .
발 의 자: 민 운 기
찬 성 자: 신동욱 의원, 오천수 의원, 임종숙 의원, 은복실 의원, 김현주 의원, 박영희 의원, 양옥희 의원, 남연희 의원, 황선화 의원

1. 제안이유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지 증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라.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안 제7조)
- 마. 지원의 중지 및 환수(안 제8조, 제9조)
-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사. 비밀유지(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협조부서: 여성가족과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라. 입법예고(2021. 8. 17. ~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운기 의원 발의)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 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 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 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 장이 정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한부모가족의 일 · 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
- 2.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 3.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 4.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 5.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 7.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사업
- 8.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6.>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6. 12. 20.>
-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 4. 12.>

-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신설 2018. 1. 16.>
-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자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

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본조신설 2007. 10. 17.]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6조(시설 우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7조의6(아동·청소년 보육·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17조의5에서 이동 <2017. 12. 12.>]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 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7(아동·청소년 보육·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1. 16.>

- 1.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 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 2.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생계가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나. 공동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 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다. 자립생활지원: 자립욕구가 강한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가. 기본생활지원: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 나. 공동생활지원: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 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 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4.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지 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11. 4. 12.]
-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 10. 17.]

-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지원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지원대상 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 원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